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제 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노래연습장업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결되어 모든 객실에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청소년실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제도 운영상 혼동을 방지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없음

라.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변경과 청소년실 유무의 변경(노래연습장업에 한

정한다)”을 “변경”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서식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서식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서식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항 목	시 설 기 준
1. 상호·간판	가. 상호는 “○○ 노래연습장”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나. 간판에는 시·군·구청에 등록된 상호를 표기해야 한다.
2. 영업소의 구획	「식품위생법」 상의 식품접객업소와 완전히 구획되어야 하며, 다 른 영업소와 따로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통로 및 칸막이	가. 통로에 접한 1면의 칸막이에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에서 1미 터 되는 지점으로부터 위로 1제곱미터 이상의 투명유리창을 설 치하여야 한다. 나. 이용료로 현금을 직접 투입하면 연주되는 반주에 맞추어 이용 자가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한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 의 시설을 갖춘 각 객실이 영업소 내부에 구획된 경우에는 출입 문 또는 통로에 접한 1면의 칸막이에 1제곱미터 이상의 투명유 리창(투명유리창의 개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유리창의 넓이를 합산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영업소 내부에 구획된 각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 다.
4. 안전시설 등	가. 아래의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영업소 내의 관련 시설 · 설비·기기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안 전시설 등의 설치·유지 기준 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기준 3)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진동 규제기 준 나. 창문 등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5. <삭제>	<삭제>
6. 조명기구	가. 통로 등 공용공간에는 우주볼(Mirror ball)외에 밝기조절장치 · 유색조명등 등의 특수조명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바닥으로부터 85센티미터 높이의 조도가 30럭스 이상이 되도 록 해야 한다.
7. 마이크	이용자가 사용하는 마이크는 아래의 정하는 기준에 맞게 소독하거나 상단에 덮개를 씌운 상태로 청결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소독할 경우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자외선소독 또는 에탄올수용액을 머금은 면이나 거즈로 마이크를 닦음 2) 덮개로 씌울 경우는 각 객실의 이용자가 바뀔 때마다 사용한 마이크의 덮개를 교체
--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4. 3. 29.>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정처분은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어떤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추가로 다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도 가목에 따라 처분한다.

다. 어떤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반행위(개별기준의 위반사항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때에는 위반횟수마다 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처분을 합산한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라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라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바. 같은 위반행위로 4차 행정처분까지 받은 후 다시 5차 이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 4차 위반 시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 1개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2개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4개월, 영업정지 3개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6개월로 처분한다.

사.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인 경우(법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다.

아. 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보며, 감경처분하려는 경우 그 영업정지기간을 산정할 때 1일 미만은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	행정처분기준
---------	----	--------

	법령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때	법 제27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영업폐쇄			
나.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법 제27조 제1항제2호	등록취소 영업폐쇄			
다. 법 제18조에 따른 노래연습장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1) 투명유리창 및 마이크 시설이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2) 그 외의 시설이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27조 제1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0일 1개월	영업정지 20일 3개월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라. 법 제21조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법 제27조 제1항제4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마. 법 제22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2)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3) 주류를 판매·제공한 때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한 때 5) 청소년을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로 고용·알선하는 행위를 한 때 6) 호객행위를 한 때 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법 제27조 제1항제5호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0일 1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영업정지 10일 등록취소 영업폐쇄	영업정지 10일 1월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월 2월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20일 3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영업정지 3월

다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한 때					
8)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9) 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한 때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10)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한 때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11)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이지 아니한 때		10일 경고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바. 법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 등을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 또는 전시한 때	법 제27조 제1항제6호				
1) 법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 등을 제작한 때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2) 법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 등을 유통한 때					
가) 적발수량이 5개 미만인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나) 적발수량이 20개 미만인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다) 적발수량이 20개 이상인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등록취소 영업폐쇄
3) 법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 등을 이용에 제공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폐쇄 등록취소	영업폐쇄 등록취소
4) 법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 등을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보관 또는 전시한 때		1월	3월	영업폐쇄	

가) 적발수량이 20개 미만인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나) 적발수량이 20개 이상인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서

※ [] 는 해당사항에 √표 하시고, 아래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상호(법인명) 및 영업소 면적(㎡) (㎡)		
	영업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소 내부에 구획된 실(室)의 수 ()개	<삭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 1부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4.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조례에 따라 ()원

※ 등록 관청 자체 확인사항: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충족 여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설치 허용 여부 및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충족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등록번호 제 호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 성명(대표자):
- 생 년 월 일:
(외국인등록번호)
- 상호(법인명):
- 영업소 소재지:
- 영업소 면적: ㎡
- 영업소 내부에 구획된 실(室)의 수 : 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 [] 등록증 [] 변경등록증을 [] 발급 [] 재발급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변경등록 신청내용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변경 전	상호	영업자(생년월일)
		영업소 면적(㎡)	내부에 구획된 실(室)의 수 ()개
		영업소 소재지	<삭제>
	변경 후	상호	영업자(생년월일)
		영업소 면적(㎡)	내부에 구획된 실(室)의 수 ()개
		영업소 소재지	<삭제>
변경사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 조례에 따라 ()원
------	-------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신고하거나 노래연습장업을 등록한 자가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6. 영업소 면적 및 내부에 구획된 실(室)의 수 <u>변경</u> 과 <u>청소년실 유무의 변경</u> (노래연습장업에 한정한다) ② ~ ⑤ (생략)	제1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 -----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 <u>변경</u> ② ~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연 락 처	(044) 203 - 3292